

박형준 / 2월 / 기초 GS+ / 12회

수강번호	문제 1	문제 2	문제 3	문제 4	문항 총점	석차	상위%	가독성 평점	응시인원
535171	19	12.5	0	0	31.5	1	0.72%	4	138
535080	17	12.5	0	0	29.5	2	1.45%	4	
535187	17	12	0	0	29	3	2.17%	6	
535258	16.5	11	0	0	27.5	4	2.90%	4	
535504	16.5	10.5	0	0	27	5	3.62%	4	
535873	17	10	0	0	27	5	3.62%	5	
535613	14.5	12	0	0	26.5	7	5.07%	5	
534775	17	9	0	0	26	8	5.80%	4	
535224	15	11	0	0	26	8	5.80%	4	
535412	14	12	0	0	26	8	5.80%	4	
535654	14	12	0	0	26	8	5.80%	5	
535461	13.5	12	0	0	25.5	12	8.70%	5	
535548	15	10.5	0	0	25.5	12	8.70%	5	
535994	15	10.5	0	0	25.5	12	8.70%	5	
535594	15.5	9.5	0	0	25	15	10.87%	4	
535820	16.5	8.5	0	0	25	15	10.87%	4	
537211	15	10	0	0	25	15	10.87%	5	
536050	15.5	9.5	0	0	25	15	10.87%	6	
536483	15	10	0	0	25	15	10.87%	5	
535140	15.5	9	0	0	24.5	20	14.49%	5	
535179	14.5	10	0	0	24.5	20	14.49%	5	
535340	13.5	11	0	0	24.5	20	14.49%	4	
535487	14	10.5	0	0	24.5	20	14.49%	4	
535364	16.5	8	0	0	24.5	20	14.49%	6	
536005	14.5	10	0	0	24.5	20	14.49%	4	
535662	13.5	10.5	0	0	24	26	18.84%	5	
535516	13.5	10	0	0	23.5	27	19.57%	5	
535539	15	8.5	0	0	23.5	27	19.57%	5	
536249	13.5	10	0	0	23.5	27	19.57%	6	
535262	13.5	9.5	0	0	23	30	21.74%	4	
535329	14.5	8.5	0	0	23	30	21.74%	4	
535540	15.5	7.5	0	0	23	30	21.74%	5	
536141	15.5	7.5	0	0	23	30	21.74%	5	
536181	13	10	0	0	23	30	21.74%	5	
535506	17	6	0	0	23	30	21.74%	6	
536027	13.5	9.5	0	0	23	30	21.74%	4	
536036	14.5	8.5	0	0	23	30	21.74%	3	
535316	13	9.5	0	0	22.5	38	27.54%	6	
535357	15	7.5	0	0	22.5	38	27.54%	5	
535511	13	9.5	0	0	22.5	38	27.54%	4	
535525	12.5	10	0	0	22.5	38	27.54%	5	
535882	14.5	8	0	0	22.5	38	27.54%	5	
535529	14	8.5	0	0	22.5	38	27.54%	5	
535732	14.5	8	0	0	22.5	38	27.54%	4	
536470	13	9.5	0	0	22.5	38	27.54%	5	
534532	11.5	10.5	0	0	22	46	33.33%	5	
535310	12.5	9.5	0	0	22	46	33.33%	4	
535335	15	7	0	0	22	46	33.33%	4	
535368	14	8	0	0	22	46	33.33%	5	
535464	13	9	0	0	22	46	33.33%	4	
535528	15	7	0	0	22	46	33.33%	4	
535587	11.5	10.5	0	0	22	46	33.33%	5	
537170	13.5	8.5	0	0	22	46	33.33%	4	
534609	12.5	9	0	0	21.5	54	39.13%	5	
535192	13	8.5	0	0	21.5	54	39.13%	4	
535219	12	9.5	0	0	21.5	54	39.13%	5	
535333	12	9.5	0	0	21.5	54	39.13%	4	
535348	14	7.5	0	0	21.5	54	39.13%	5	
538137	12	9.5	0	0	21.5	54	39.13%	4	
535514	11	10.5	0	0	21.5	54	39.13%	4	
535521	13	8.5	0	0	21.5	54	39.13%	5	
535211	11	10	0	0	21	62	44.93%	4	

535319	12	9	0	0	21	62	44.93%	4
535331	13	8	0	0	21	62	44.93%	5
535345	15.5	5.5	0	0	21	62	44.93%	5
535579	14	7	0	0	21	62	44.93%	5
535584	9.5	11.5	0	0	21	62	44.93%	4
538264	12	9	0	0	21	62	44.93%	5
536184	15.5	5.5	0	0	21	62	44.93%	4
535244	13	7.5	0	0	20.5	70	50.72%	5
535337	13	7.5	0	0	20.5	70	50.72%	5
535577	15.5	5	0	0	20.5	70	50.72%	6
536010	12	8.5	0	0	20.5	70	50.72%	6
536161	11.5	9	0	0	20.5	70	50.72%	4
535659	14.5	5.5	0	0	20	75	54.35%	5
536367	20	0	0	0	20	75	54.35%	6
536567	13.5	6.5	0	0	20	75	54.35%	6
535294	15.5	4	0	0	19.5	78	56.52%	4
535473	12.5	7	0	0	19.5	78	56.52%	5
536096	13.5	6	0	0	19.5	78	56.52%	5
535523	9.5	10	0	0	19.5	78	56.52%	4
534515	10.5	8.5	0	0	19	82	59.42%	4
535321	12	7	0	0	19	82	59.42%	5
535819	14.5	4.5	0	0	19	82	59.42%	5
535874	12	7	0	0	19	82	59.42%	4
536185	14	5	0	0	19	82	59.42%	5
537214	12	7	0	0	19	82	59.42%	5
535805	12	7	0	0	19	82	59.42%	5
535954	12.5	6.5	0	0	19	82	59.42%	5
534964	15	3.5	0	0	18.5	90	65.22%	5
535174	10	8.5	0	0	18.5	90	65.22%	4
535215	12	6.5	0	0	18.5	90	65.22%	6
535462	13	5.5	0	0	18.5	90	65.22%	4
535735	11	7.5	0	0	18.5	90	65.22%	5
535356	11.5	7	0	0	18.5	90	65.22%	5
538386	11	7.5	0	0	18.5	90	65.22%	5
535183	13	5	0	0	18	97	70.29%	4
535253	9.5	8.5	0	0	18	97	70.29%	3
535307	14.5	3.5	0	0	18	97	70.29%	6
535498	11	7	0	0	18	97	70.29%	5
535857	12	6	0	0	18	97	70.29%	4
535864	14	4	0	0	18	97	70.29%	4
535991	10	8	0	0	18	97	70.29%	5
536054	10.5	7.5	0	0	18	97	70.29%	4
535155	9.5	8	0	0	17.5	105	76.09%	6
535469	11	6.5	0	0	17.5	105	76.09%	4
535617	11	6.5	0	0	17.5	105	76.09%	5
535642	10.5	7	0	0	17.5	105	76.09%	4
535651	11	6.5	0	0	17.5	105	76.09%	5
535597	11	6	0	0	17	110	79.71%	4
536071	11	5.5	0	0	16.5	111	80.43%	5
535974	13	3	0	0	16	112	81.16%	4
536093	13	3	0	0	16	112	81.16%	5
536599	9.5	6.5	0	0	16	112	81.16%	5
535465	8	7.5	0	0	15.5	115	83.33%	4
535596	10.5	5	0	0	15.5	115	83.33%	4
535661	15.5	0	0	0	15.5	115	83.33%	6
535218	15	0	0	0	15	118	85.51%	6
535239	14	1	0	0	15	118	85.51%	4
535488	9.5	5.5	0	0	15	118	85.51%	5
535999	15	0	0	0	15	118	85.51%	5
535161	9.5	5	0	0	14.5	122	88.41%	5
535217	10	4	0	0	14	123	89.13%	5
535295	14	0	0	0	14	123	89.13%	4
535647	8	6	0	0	14	123	89.13%	4
535742	9	5	0	0	14	123	89.13%	5
538175	7	7	0	0	14	123	89.13%	3

536014	13.5	0	0	0	13.5	128	92.75%	5
535375	10.5	2.5	0	0	13	129	93.48%	4
535860	7.5	5	0	0	12.5	130	94.20%	5
536592	12.5	0	0	0	12.5	130	94.20%	5
536108	11.5	0	0	0	11.5	132	95.65%	3
534529	9	2.5	0	0	11.5	132	95.65%	5
535325	11	0	0	0	11	134	97.10%	5
535223	10.5	0	0	0	10.5	135	97.83%	5
535349	10.5	0	0	0	10.5	135	97.83%	5
535453	8.5	0	0	0	8.5	137	99.28%	6
538047	3.5	2.5	0	0	6	138	100.00%	3

박형준/2월/기초GS/12회/1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각 행위의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행위를 모두 검토해야 하나, 사소한 행위의 경우 누락한 경우가 많아 보였습니다.

사실관계에 나오는 행위를 체크해 놓은 후 간단하게라도 검토하고 넘어가 주세요.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방법발명에 대하여 권리 소진이 발생하는지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판례를 두껍게 작성했는지, 사안 포섭을 체계적으로 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

사용 전 구매 행위에 대한 검토를 누락한 답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2) 설문 2

마찬가지로 교체행위만 검토하고 교체 전/후 사용행위를 누락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교체 행위의 경우 설문상 불분명하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포섭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3) 설문 3

대부분 제작*공급행위와 검수*시연행위를 구분하여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사안포섭 보다도 판례에 키워드를 포함하여 잘 작성했는지에 따라 점수를 달리 부여했습니다.

3. 소결

침해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 각 행위마다 평가를 달리해주셔야 합니다.

사소한 행위의 경우 침해 여부를 문제점 목차에 작성한 답안이 다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의 답안보다는 행위별로 목차를 달리하여 침해 여부를 검토한 답안이 인상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침해 요건 일반론에 대해 길게 작성한 답안이 몇몇 있었는데, 이 경우 강약 조절이 된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박형준/2월/기초GS/12회/2번	채점자
	윤영우

1. 전반적인 총평

乙의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음을 검토한 후 선 특허권자, 후 특허권자, 제3자가 A+B+C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작성해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문제에 사실관계가 거의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각 설문마다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작성해야 했습니다.

2. 설문별 채점평 및 주의할 점

(1) 설문 1

이용관계 여부에 대해 사안 포섭할 때 “일체성 상실” 키워드를 작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습니다.

실시 방법을 다각적으로 작성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2) 설문 2

마찬가지로 실시 방법을 다각적으로 작성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답안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도 타당한 경우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3) 설문 3

丙의 실시 가부를 검토하지 않고 바로 실시 방법을 작성한 답안이 몇몇 있었습니다.

丙의 실시가 甲, 乙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되므로 실시할 수 없다고 작성한 다음에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실시 방법을 다각적으로 작성한 답안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3. 소결

답이 명확한 만큼 다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이용관계의 경우 선 특허권자와 후 특허권자가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중요
논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gs에 작성하지 못한 조치는 확실히 암기하고 넘어가 주세요.

이번 주도 답안 작성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문 제-1]

I. 실용(1)

1.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

각각의 실시행위 자체, 독립적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구매 행위.

특허법상 실시가 아니므로 - 침해가 아니다.

3. 사용 행위

(1) 소권이론이다.

특허권자인 실시권자로 하여 각법원에 특허권이 인정된 경우 무척의 관행에 소권권리는 이른바 제 3자에게 인정되리라.

(2) 제 3자에

1) 방법론적 소권자부

특허권자 또는 실시권자 방법론적으로 소권권으로 구현된 물건은 적법하게 인정된 경우 특허권은 이에 무척은 관행에 소권되므로 양수권이나 그 전속자가 실시하는 경우 내역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방법론적은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

제 예는 그 물건의 본래용도가 어떻게든지
 실시 받거나 다른 용도가 없든지, 그 물건의
 어떻게든지 특유한 개질수단이 기록되어 있는
 기술사항의 핵심이 되는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그 물건을 속하게 이루어진
 공구나 방법에서 전제항목에서 기재하는
 비록 등 중점적의 근거를 포함하여 있다
 3) 논제.

물건의 기록으로 유용한 개질, 대안, 변형, 등
 종류, 어떻게든지 특유한 수단은 소위 사안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3) 사안

① 이 사건 명제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에서 다른 용도가 없다

② 실시상 발명명세서 특허발명의 핵심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실시를 포함한다

③ 기록상, 다른 구성요소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전적으로 기재된 물건이다

④ 사안을 이 사건 명제를 다른 용도, 등
 있는 실시예에서, 다른 구성요소 이 사건
 명제를 포함한다 특유한 이기 목적은
전 구성요소 소위 실시예

(4) 결론 - 초 소극

이 이 사건 통제는 이용되어 야한 특허
반영을 신디하는 행위는 특허권의 효력이
이러기 않고 특허권 을

5 II 결론(2)

1. 간접침해 - ~~특허~~ 방법발명의 경우

방법발명의 실시상의 사용의 목적을 향하여
생산 예로 주어 행하는 것은 특허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2. 논점

프로그램이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즉, 이 사건
통제하는 '생산 ~~행위~~하는 행위'에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3. 특허/재생명의 범위 - 특허법원 판례

(1) 특허권판의 기준 - 고쳐진 등인성이 ~~행위~~의 유효성의
고쳐진 이치도 특허권자의 등인성이 ~~행위~~ 유효하면
특허 사용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특허권 ~~행위~~로
판단으로 볼 수 있고, 등인성은 ~~행위~~로 인정
때에는 실질적인 행위행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므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2) 제3자의 등인성 판정의 기준



제출된 개량권 청구, 이용행위 및 권리 침해의
증빙서류를 첨부한다.

4. 사안

(1) 권리 재생산 여부

① 설문서 불문행위. 프로브는 이사진 등록기 사용에
속사조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사진
등록기는 프로브 사용 관련 규정은 포함되지 않으며
프로브를 이사진 등록기에 의해 기록이
남은 것이 인정된다

② 피내역 프로브 조제 권유로 이사진 등록기
사용행위 유권판정 인정된다

③ 피내역 프로브의 조제행위는 이사진
등록기의 사용행위이며 사용행위 인정으로
이행행위 유권판정에 속한다

(2) 권리 - 소극

① 프로브의 조제는 등록기의 사용행위이며
권리 침해 행위로 인정된다.

② 이사진 등록기 사용행위는 권리 침해
이사진 등록기 사용행위이며 권리 침해
행위로 각 권리 침해 행위로 인정된다

③ 권리 조제 조제행위 침해가 아니라

고 실용 (3)

(1) 제각 급급 행위

(1) 직권 침해로 보 - 소극

특이 B에게 통계를 제각 급급하는 행위는.

특이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 행위의 행위로

이상의 직권행위이다

(2) 간접 침해의 권리 - 회칙

특이한 실용적 보충을 위해, 직권행위 권한에

관하여 개입을 들은 일정한 행위는 중보 간접행위

(3) 권리의 침해로 보

특이한 ~~이행행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4) 간접침해로 보

1) 직권행위로 보

① 독립권 ② 권속권 등이 아닐때, 이따금 직권행위로
특이한 행위를 하는 경우이다

2) 실사권자에게 권리를 침해하기 - 회칙

간접행위 여부에 따라 특이한 행위를 하는지

여부 판위하여 그 권한을 침해하는지

것이고, 실사권자에게 특이한 행위를 하는

행위 또는 간접행위 일정한 사실

행위 또는 간접행위 일정한 사실

행위 또는 간접행위 일정한 사실

제 3항의 실시방식을 설명하는 문장은 제 1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제 2항의 목적을 달성
 하는 수단인 것이 아니라 제 1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3) 결론

신시권과 제 2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것이다. 각각의 기능은 다르므로 다르다

(5) 사안

신시권과 제 1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것이다. 각각의 기능은 다르므로 다르다
 각각의 기능을 달성하는 수단인
 각각의 기능을 달성하는 수단인

2. 관습 사안 행위

(1) 제 1항

종상신시권과 제 1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것이다. 각각의 기능은 다르므로 다르다
 각각의 기능을 달성하는 수단인
 각각의 기능을 달성하는 수단인

(2) 사안

제 1항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인
 각각의 기능을 달성하는 수단인



시인 황해 속나라의 꿈에 대한

3. 정호 - 소곡

저는 이시조 속나라의 꿈에 대한 조에 대한

- 끝 -

[분과 2]

1. 선문 (1)

이용근의 속나라

(1) 물레짐

1월 13일 2월 1일 1월 9일 2월 1일 '이시조'에 대한 속나라

(2) 속나라

① 속나라 ② 속나라 ③ 속나라 ④ 속나라
속나라 ⑤ 속나라 ⑥ 속나라

(3)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4)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속나라



특수방의 선의는 9m 이므로 2로 나누어
 4.5m 이므로 2로 나누어

(5) 선의

Cel 4120 인하여 선의는 4.5m 이므로 2로 나누어
 2.25m 이므로 2로 나누어
 1.125m 이므로 2로 나누어

2. 선의 선의 기법

(1) 선의 선의 기법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2)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3. 선의 선의 기법

(1)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2)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선의

(3) 선의

특허의 예외, 무효의 원인, 소권 이익 등
근거를 볼 수 있다

3

1) 실용 (2)

1) 특허 실시 방법

(1) 실용의 본질적 실시

① 특정 특허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실시
하는 경우

② 특정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실시하는 경우

(2) 사안

특정 실시 방법의 경우 A+B+C를 실시하는 경우

2) 특허 실시 방법

(1) 특허

특정 실시 방법의 경우 실시하는 경우

(2) 특허 실시

특정 실시 방법의 경우 실시하는 경우

특정 실시 방법의 경우 실시하는 경우

특정 실시 방법의 경우 실시하는 경우

(3) 특허

특정 실시 방법의 경우 실시하는 경우



3.5

1. 실용 (3)

1. 실용 가법

(1) 중첩 가법

제3차 \mathbb{R} 이 법칙 $A+B+C$ 를 \mathbb{R} 이 법칙

무엇 \mathbb{R} 이 법칙 만 \mathbb{R} 이 법칙이다

(2) 선형

제3차 \mathbb{R} 은 \mathbb{R} 이 법칙 $2m$ 이 법칙이

법칙 $A+B+C$ 를 선형 법칙

2. 실용 방법

(1) 가법

\mathbb{R} 이 법칙 $2m$ 이 법칙 \mathbb{R} 이 법칙

(2) 가법 법칙

\mathbb{R} 이 법칙 $2m$ 이 법칙 \mathbb{R} 이 법칙 \mathbb{R} 이 법칙

(3) 중첩 가법

\mathbb{R} 이 법칙 $2m$ 이 법칙 \mathbb{R} 이 법칙 \mathbb{R} 이 법칙

(4) 중첩 가법

\mathbb{R} 이 법칙 $2m$ 이 법칙 \mathbb{R} 이 법칙 \mathbb{R} 이 법칙

(5) 가법

\mathbb{R} 이 법칙 $2m$ 이 법칙 \mathbb{R} 이 법칙 \mathbb{R} 이 법칙

내용 중요. 기록성 권장
신원사학원 1544-3383 patent.willbes.net

6.5

[문제-1] (특허법, 이하 조 이라 한다)

I 문제-(1)

1. 특허권 특권의 범위

특허권 범위 판단시, 실시행위가 여러개인 경우 이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권리 판단하여야 한다.

2. 구체행위의 권리여부 - (소극)

구체행위는 특정조항(나)목의 방법발명의 실시행위가 아니므로 권리 아니다.

3. 차용행위의 권리여부 - (소극)

(1) 소권이론의 의미와 근거

① 특허권과 또한 권리가 본래 개방하게 양도된 특이점이 개방는 특허권이 소멸한다는 이론이다.

② 차용권과 달리 명목의 구분이 없다. 물건의 자유로운 이용 및 개방권을 위해 설정되는 특정한 범위이다.

(2) 방법발명 소권이론 '제외'

① 특허권과 또한 권리가 우리나라에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분한 물건을 개방하게 양도하면, ②

특허법은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므로, ③ 양수인이나 전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하는 행위에 관하여 특허권의 효력이 마무리 않는다고 하였다.



(3) 방법발명을 실용성을 구별한 물건 범위

① 방법발명을 실용성으로 구별한 물건인지 여부는 이의 통상적인 관행은 그 물건의 본질 자체가 방법발명이 실시되고 다른 용도는 없는지, ii) 그 물건이 방법발명의 실시상의 대상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iii) 그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해가 방법발명 전체 공해에 비하여는 비중 등 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정이 따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4) 논거

① 물건의 구조적 유형 및 구성요소를 지칭할 수 있고,
 ② 때때로 변형이 가능하지만, ③ 이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은 실용적으로 동일한 경우가 많아 ii) 방법발명을 특정한 소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없으며, iii) 일례로 방법발명을 일률적으로 특정한 소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특허라는 취지에서 방법발명을 실용성으로서 특허권을 소급에 부여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5) 사안의 경우

위 사안에서 2의 용접기의 사용행위는 결국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용성을 하미코일 개연성이 높은 실시예의 태양으로 볼 수 있으나, 무으로 부터 통상실시권을 실용성은 A외사로부터 용접기를

구체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용어는 ① 이
 사전 특이발명의 표시어만 사용하든 상호 다른 용어가
 있다. ② 이 사전 특이발명의 기술사상의 대상에 해당한다
 고 볼 수 있으므로, ③ 이 사전 특이발명을 표시어인
구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용어를 표시어라
 하여 구체하여 사용한 것이 경우는 특이구의 표시어
 표시어 상호가 아니다.

5

II. 실용 - (2)

1. 간접용어 - 발명의 경우

특이 발명의 표시어만 사용하든 상호를 상호로 표시하여야
 한다. 단, 상호의 경우 제외하여야 한다. (보 1과 2
 제 2호)

2. 본질정리

이 사건의 용어의 개 중 프를 표하여 사용하든
 경우가 특이발명의 표시어만 사용하든 상호를 '상호'
 하는 행위에 해당하든 표한다.

3. 수리 재발명의 범위

(1) 수리

복의 표에 아이므로 표에 표의 표에 표하면
표 사용의 표를 표는 표에 표하므로 표
 볼 수 있다.

(2) 개선상호

부품을 교체하면 원래 기종과의 동일성을 깨달을 정도로
이러한 때에는 실질적으로 상당양위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
라고 볼 수 있다.

~~4. 기/개/상/호/의~~

4. 제품의 동일성 판단 시 고려요소

부품의 교체양위가- 제품의 동일성을 깨달을 정도로
상당양위에 도달하도록 여부는 다음 제품의 개량에
성질, 이용형태 및, 특이성의 유무 등이 중요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5. 구체적인 판단방법

① 교체율이 특이성명 관계에서 제외되는 비율, ② 교체
부분이 제품 전체에서 제외하는 정도에 비등, ③ 제품판에
당시 가장 교체가 예상되는 일일, ④ 교체 당시
제품의 수명이 다할수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6. 수안의 경우

위 수안에서 ① 프로브는 이 사건 통검기의 여러 구성
중 하나인 전체에서 제외하는 비율이 크다고만 볼 수
없으며, ② 교체되는 부분인 프로브는 이 사건 통검기에
비해 경제적으로 단가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수적으로
제품 전체에서 제외하는 정도에 비등으로 직감할 수

있다. ② 이러한 사항들을 관용하여 보면, 프록시의
오해상위는 ~~특수상위~~ 이 사건 통상의 등위상을 유지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후리에 해당 원리를 볼 수 있다.

7. 결론

따라서, 2차 상위는 특이한 상위가 아니다.

55

II. 결론 (가)

1. 제1차의 권용종 제각. 승급상위 - 간접상위 여부 - (보)

(1) 권용종의 승급상위 실시 여부 - (주)

또는 부위사로부터 제각을 부여받아 제각하는 사자에게
이 사건 통상을 장수 시연하여 이 사건 특이상위를
유지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2) 간접상위 제각의 제1차 단계

1) 직접상위 요건

① 독립성, ② 승급 등의 특성이 있는가, ③ 승급제는
이에게만 적용되는 것인가, ii) 제1차 상위
와의 차이가 다르다.

2) 승급제

① [간접상위 단계] 간접상위 제각은 이차나 특이성이
상위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날 경우 (이때 그 필요성을 위한
승급) 이는 가능하다. ② [제1차인 경우] 실시연락이
제각자에게 그 권용종의 제각을 위하여 그로써

전통을 공백화 특허발명을 최초로 공개된 것이 그 개
 의 전통 상한: 양근 등 10여 개 특허권의 간접당사로
 인정하면, 1) 실시권자의 실시권이 부당한 제약을 가하
 게 되고, 2) 특허권이 부당하게 약화되고, 3) 특허권은
 소진된 생명체 때에 개적으로부터 전통을 공백화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까지 미처하여 실제로 큰
 손해 등 ~~특~~ 특허권자의 특권 이익이 세습기 등에
 편익으로 이어지므로, ④ [결론] 간접당사비 인정판단
 이 볼 수 있다.

3) 검토

실시권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 제정권자의
 인정권행위나 수락권리 양도비, 직접권자의 기능
 등이 없으므로, 실행권이 타당하다.

4) 사안의 경우

위 사안에 명백하므로 간접당사비 구제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므로, 간접당사비 제도의 내재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간접당사비 인정하기 안한다.

2. 제2차 전통 공백화 특허 시(연생우-직접당사비)-(53)

(1) 실행권

1) 과거 전통실시권자에게 타당요한 통계를 제2차
 농경의 과정에 아산요한 통계의 인정요인 무엇으로
 타당요한 통계를 인정하여 간접당사비를 인정한다.

② 권리가 출생일 때부터 마땅히 부여된 특성을 제각각-상징적
 성질이 동인의 특성을 상징하는 권리인 볼수 없는
 아님. 또한 제각각-상징성이 필수적인 권리라는 점도
 수평성이 부족 특이성에 대한 권리 특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수평의 경우

위 수평에 7의 권리의 제각각-상징성이 상징
 인 아님. 이에 필수적인 수평성은 권리의 성
 질 수평성으로 상징이 아니다.

3. 결론

7의 모든 성질은 이 사건 특성에 따라 상징
 이 아니다.

결론

대문]

[문제-2]

I. 심문-1)

1. 이문관계 성립 여부 - (거부)

(1) 수평성

① 수평포장성, ② 개량-특성성, ③ 구체적성, ④ 실시
 불화성, ⑤ 심비불가피성이 있다.

(2) 수직성

① [이문관계 보사] 신 특발권과 독 특발권이
 1982년 이후 제정된 이문관계에 있는 경우, 독 특발

6

은 신 특이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되고, ② [이동관계
성립요건] (i) [물인 이용] 이거나 이용관계는 후발명이
신 특이발명의 기술적 개개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
하는 것으로 후 발명이 신특이발명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리. 후 발명 내의 신특이
발명이 발명으로서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ii) [관용 이용] 이는 신특이발명과 동일한
발명 뿐만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외이다.

(3) 검토

(후진발명의 취지범위를 위한 것) 1883 제2 조 제1항,
취지범위의 태도가 양호 타당하다.

(4) 사안의 경우

위 사안에 있어 후 발명 A+B+C는 무의 신특이발명
A+B 이 C라는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추가하였는데,
신특이발명인 A+B의 요건을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신특이발명이 후발명에서
취지를 유지하여 동일한 사안으로 보므로 그의 발명은
무 신특이발명과 이동관계에 해당한다.

2. ~~①~~ Z의 발명 A+B+C 취지가부

Z는 이동관계에 해당하는 무의 취지범위가 Z의 발명인
A+B+C를 취지할 수 없다. (선 983)

2. 甲의 발명 $A+B+$ 의 실시방법

(1) 실시방법

선출권자는 후술권리인 29m 시각을 발아
 후술발명 $A+B$ 를 실시할 수 있다.

(2) 동등 실시권 인정사유

① 선출권자 甲이 $29m$ 에 대해 다른 시각을 다발하여
~~후술권리인~~ ~~선출권자~~ 인 2이 선출권자인 甲에
 시각을 등록한 양이나 甲이 2로부터 시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② 후술발명 $A+B+C$ 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면, ③ 선출권자 甲은 후술발명 $A+B+C$
 의 실시방법을 $29m$ 특이성에 기재된 바를 요구
 할 수 있다. (29 138조 3항)

(3) 기타 조항

2 조항 특이성, 동등이유, 제정권, 29m
 등을 실시할 수 있다.

III. 결론

제2차 丙의 발명 $A+B+C$ 의 실시방법 - (53)

① 丙의 발명 $A+B+C$ 의 실시를 선출권자인 甲의
 발명 $A+B$ 에 대해서 합의 ② ~~후~~ 후술권자인
 2의 발명 $A+B$ 에 대해서 합의이므로,
 ③ 丙는 발명 $A+B+C$ 를 甲과 2의 어각이

실시할 수 있다.

2. 본 발명 A+B+C의 실시방법

(1) 실시예가 포함

본 발명은 본 발명 2mm 구멍을 받아 본 발명 A+B+C를 실시할 수 있다.

(2) 구체적 실시

그 외에도 특수한 방식, 복합식유기소사, 제형유기, 유기적 등의 실시를 할 수 있다.

[O(1)(1)(1)(1)(1)]